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58

발의연월일: 2020. 7. 28.

발 의 자:김영호·이장섭·박영순

양정숙 · 강선우 · 이인영

김민기 · 임종성 · 박홍근

양경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경찰은 경찰관 수가 10만이 넘으며 그동안 끊임없이 '왜곡수사', '편파수사', '정치적 표적수사' 등 국민으로부터 그 공정성과 객관성, 청렴성, 신뢰성 등이 의심받아 이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추진 등에 따라 경찰의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있음.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대내외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가 필수적인 요소임.

이에 경찰청장의 구체적 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 및 지방수 사본부를 설치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절차·임기 및 자격요건과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권 및 징계권 등의 임용권을 규정하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방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의 개별 사건에 대 한 구체적 수사 지휘·감독 및 관여를 금지함. 또한, 경찰 수사의 권한 남용, 불공정 수사 등 경찰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각지방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1조제3항·제11조의2·제14조제2항·제17조제2항,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2, 제31조·제32조신설).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수사본부의 설치)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지방 경찰청에 지방수사본부를 둔다.
 - ② 국가수사본부에 국가수사본부장을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방 형 직위로 보한다.
 - ③ 지방수사본부에 지방수사본부장을 두고 지방수사본부장 예하에 복수의 수사대장을 둔다. 수사대장을 두는 경우 수사대장 1명은 4곳 내외의 경찰서 수사를 관장한다.
 - ④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⑤ 국가수사본부장은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지방수사본부장, 수사대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하부조직에속한 경찰공무원에 대해 「경찰공무원법」 제1조의2에 따른 임용,

전보 및 복직의 권한을 가진다.

- ⑥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임용, 전보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지방수사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① 국가수사본부장 및 지방수사본부장은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수 사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이 때 국가수사본부장 및 지방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속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아니한다.
- ⑧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임기가 끝난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 ⑨ 국가수사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1. 수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 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 원 또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했던 사람

-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조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5. 제1호부터 제4호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거나 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 기간이 15년 이상인 사람
- ① 국가수사본부장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은 「경찰공무원법」 제 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1조를 준용한다.
- 제1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

제1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

제9장(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2, 제31조 및 제3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수사심의위원회

- 제27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국가경찰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8조(심의위원회의 업무) ① 심의위원회는 제3조 각 호에 대한 국가 경찰 수사에 관하여 경찰의 영장신청 심의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사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 1. 피의자 또는 피해자 및 가해자로부터 수사의 공정성, 적법성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수 사
- 3.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표 1(보고 및 수사지휘 대상 중요사 건)에 해당하는 경우
- 4. 영장을 재신청하는 경우
- 5.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
- 6.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에 따라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에 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재의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명)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사무국장 1인의 상임 심의위원과 7인 이상 30인 이하의 비상임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은 7인 이상 50인 이하의 비상임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상임 심의위원은 개방형 직위로 보한다.
- ③ 상임 심의위원은 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 심의위원은 경찰위원회가 공모·심사하여 임명한다. 경찰위원회는 임명을 제청하거나 임명할 때 전문성과 공 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상임 심의위원인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했던 사람
-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조교 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거나 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 기간이 15년 이상인 사람
- ⑤ 비상임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1. 수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 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 원 또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했던 사람
-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조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거나 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 6.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교육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거나 했던 사람으로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심의위 원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 ⑥ 상임 및 비상임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상임 심의위원 은 연임할 수 없다.
- ① 심의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며 구체적인 심의 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정당에 가입하여 당적을 가지고 있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제30조의2(심의위원의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하는 수사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1. 심의위원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 및 가해자인 때
 - 2. 심의위원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 및 가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 가 있었던 자인 때
 - 3. 심의위원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 및 가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 독인인 때
 - 4. 심의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 5. 심의위원이 해당 수사에 관여한 때
- 제31조(「국가공무원법」의 준용) 심의위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를 준용한다.
- 제32조(심의위원회의 소집, 개최 및 의결)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7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상임 심의위원인 위원장 1인 및 사무국장 1인, 비상임 심의위원 중 무작위로 선출된 7인 등 총 9인의 재석으로 개최하고, 재석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경찰청장)	제11조(경찰청장)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	3
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	
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	
휘·감독한다. <u><단서 신설></u>	<u>다만, 개별 사건의</u>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관여할 수
	<u>없다.</u>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1조의2(수사본부의 설치)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지방경찰청에 지방수사본부를
	<u>둔다.</u>
	② 국가수사본부에 국가수사본
	부장을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방형 직위로 보한다.
	③ 지방수사본부에 지방수사본
	부장을 두고 지방수사본부장
	예하에 복수의 수사대장을 둔
	다. 수사대장을 두는 경우 수사
	대장 1명은 4곳 내외의 경찰서

수사를 관장한다.

- ④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⑤ 국가수사본부장은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지방수사본부장, 수사대장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하부조직에 속한 경찰공무원법」제1조의2에 따른 임용, 전보및 복직의 권한을 가진다.
- ⑤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 전보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지방수사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⑦ 국가수사본부장 및 지방수 사본부장은 경찰청 및 지방경 찰청 수사업무를 관장하며 소 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이 때 국가수사본부장 및 지방수 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속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 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

지 아니한다.

- ⑧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3 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 며, 임기가 끝난 때에는 당연퇴 직한다.
- ⑨ 국가수사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1. 수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 한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 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사람
-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했던 사람

- 제14조(지방경찰청장) ① (생략)
 - ②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국가경찰기관 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u><단서</u> 신설>

제17조(경찰서장) ① (생 략)

-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 야의 조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5. 제1호부터 제4호 중 2개 이
 상의 직위에 재직하거나 하
 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 기간이 15년 이상인
 사람
- ① 국가수사본부장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은 「경찰공무원 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1조를 준용한다.
- 제14조(지방경찰청장) ① (현행과 같음)
 - 2 -----
 - _____
 - _____
- 제17조(경찰서장)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2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 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단서 신설>

③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 -----. 다만,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관 여할 수 없다. ③ (현행과 같음)
- 제9장 수사심의위원회 제27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국가경찰 수사의 공정성, 투명 성 및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 여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 수 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 제28조(심의위원회의 업무) ① 심 의위원회는 제3조 각 호에 대 한 국가경찰 수사에 관하여 경 찰의 영장신청 심의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사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 1. 피의자 또는 피해자 및 가해 자로부터 수사의 공정성, 적 법성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 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 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수사
- 3.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 표 1(보고 및 수사지휘 대상 중요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 4. 영장을 재신청하는 경우
- 5.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
- 6.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에 따라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징계 등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이 때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의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

<신 설>

명)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 인 및 사무국장 1인의 상임 심 의위원과 7인 이상 30인 이하 의 비상임 심의위원으로 구성 한다. 다만,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은 7인 이상 50 인 이하의 비상임 심의위원으 로 구성한다.

- ② 상임 심의위원은 개방형 직 위로 보한다.
- ③ 상임 심의위원은 경찰위원 회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 상임 심의위원은 경찰위원회가 공모·심사하여 임명한다. 경찰 위원회는 임명을 제청하거나 임명할 때 전문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상임 심의위원인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 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

- 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했던 사람
-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 약의 조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2개이상의 직위에 재직하거나 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 기간이 15년 이상인 사람
- ⑤ 비상임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중에서 임명한다.
- 1. 수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 한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 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사람
-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했던 사람
-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 야의 조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거나 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 를 합산한 기간이 10년 이상 인 사람
- 6.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교육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거나했던 사람으로서 사회적으로

<신 설>

<신 설>

덕망이 있고 심의위원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 ⑥ 상임 및 비상임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상임 심 의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 ⑦ 심의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며 구체적인 심의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정당에 가입하여 당적을 가 지고 있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 니한 사람
 -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30조의2(심의위원의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신 설>

사람은 해당하는 수사의 심의 에서 제척된다.

- 1. 심의위원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 및 가해자인 때
- 2. 심의위원이 피의자 또는 피 해자 및 가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 3. 심의위원이 피의자 또는 피 해자 및 가해자의 법정대리 인, 후견감독인인 때
- 4. 심의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 5. 심의위원이 해당 수사에 관 여한 때

제31조(「국가공무원법」의 준용) 심의위원에 대하여는 「국가공 무원법」 제60조를 준용한다.

제32조(심의위원회의 소집, 개최 및 의결) ① 심의위원회의 회 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7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위원장 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상임 심의위

원인 위원장 1인 및 사무국장 1인, 비상임 심의위원 중 무작 위로 선출된 7인 등 총 9인의 재석으로 개최하고, 재석 심의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